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군 공항 이전 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둔 한시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결과를 반영하고,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2024년 1월 30일”을 “2026년 1월 30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2024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78”을 “672”로 하고, 일반직 계 “670”을 “6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48”을 “64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4”를 각각 “72”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71”을 “69”로 한다.

별표 3 1.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4년 1월 30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6년 1월 30일)

별표 4 중 3. 제3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3월 31일) “2024년 3월 31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방부 정원 6

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국 방부 자원관리실에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 024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공항이전사업 단을 둔다. ② ~ ⑥ (생 략)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 ----- ----- ----- 20 26년 1월 30일----- ----- -----.
제30조(한시정원) ① (생 략) ② 삭 제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 원을 국방부에 둔다.	제30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③ ----- ----- ----- ----- 2026년 3월 31일-----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78</u>		<u>672</u>	-6	
	.		.		.		
	.		.		.		
일반직	계		<u>670</u>		<u>664</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48</u>		<u>642</u>	-6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국방부 소속기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6조제1
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4	72	-2
일반직 계	74	72	-2
3급 또는 4급 이하	71	69	-2

[별표 3]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군인제외) 정원표(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4항, 제29조의3제4항, 제29조의4제4항, 제29조의6제4항 및 제29조의7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1. 군공항이전사업단(존속기한: 2026년 1월 30일)	<u>총계</u>	<u>총계</u>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30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3. 제3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3월 31일)	<u>총계</u>	<u>총계</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3